

[일련번호 : 8]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내 용

1. 업무개요

◻◻동은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주민등록의 재발급)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신청인에게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1명당 5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수입증지 발행을 누락하거나 수수료를 미부과 또는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부과(수입증지 금액 착오 등)한 사실이 있으며, 수수료 무료 또는 면제 대상자에 수수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상에 기재사항을 누락하였음에도 이를 정정하지 않고 신청서를 수리하였으며, 수수료 면제 대상자인 경우 면제여부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채 신청서를 처리하는 등 신청서 접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소홀 내역

연번	대상자	생년월일	재발급 신청일자	수수료		부적정내역
				재발급 사유	수수료 징수	
1			221215	주소변경 간부족	무료	기존 증 미회수
2			221207	주민등록번호 변경	5,000원	기존증 반납, 과다징수
3			221207	사유체크 누락	무료	신청서 작성 미흡, 무료 사유 확인안됨
4			221123	분실	600원	과소부과
5			221122	분실	무료	부과누락
6			221031	지문재등록	5,000원	기존증 반납, 과다징수
7			221018	지문재등록	면제	기존증 미반납, 부과누락
8			241206	분실	면제	미부과
9			241122	용모(사진)변경	면제	미부과
10			241120	분실	면제	미부과
11			241120	분실	증지없음	미부과
12			241105	그 밖의 사유	무료	미부과, 기존증 미회수
13			241029	용모(사진)변경	증지없음	미부과
14			241024	분실	증지없음	미부과
15			241015	미작성	증지없음	신청서에 사유, 신청 인 이름 등 작성미흡
16			241014	분실	5000원 부과 후 결손	결손처리 사유 미작성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